

1. 개정이유

최근 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부당한 요금을 수취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택시 부당요금 수취에 대한 제재수위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의 처분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요금 수취기사의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등 처분기준을 1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2차 위반 자격정지 60일, 3차 위반 자격취소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 상
나.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법 제16조제1항 제2호	자격정지 30일	자격정지 60일	자격취소

부 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